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50
----------	-------

발의연월일 : 2025. 10. 20.

발 의 자 : 백혜련 · 이건태 · 김기표
김남희 · 김상욱 · 박지혜
염태영 · 전용기 · 조인철
정청래 · 김병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일상생활의 중요한 법적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최고법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추적 기관임.

그러나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에 불과하여 연간 56,000건을 상회하는 본안사건을 처리하는 데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여 심층적 심리와 숙의가 어렵고,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로 국민의 상고심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한편,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도 문제임. 최근 10년간 임명된 대법관 후보자 다수가 특정 대학 출신의 50대 남성으로 집중되어 있어 구성

의 획일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법관 인사제도는 폐쇄적 구조로 국민과 법조계의 평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법관의 재판 태도와 전문성에 대한 변호사 및 국민의 체감은 사법 신뢰와 직결되나, 현행 제도에서는 이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성별·지역·경력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법관평가 인사평정 기준에 외부평정을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 서비스 제공 및 사법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 제7조, 제9조의3, 제25조의2 및 제41조의2 등).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4명”을 “26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대법원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의 2분의 1로 구성되는 제1연합부와 제2연합부를 둔다.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과 각 연합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 ④ 대법관 전원의 의견으로 재판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심리 중인 연합부 대법관(대법원장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전국법관대표회의) ① 판사회의의 법관대표로 구성되는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둔다.

②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판사수를 고려하여 법관대표를 각급 법원별로 할당하여 대표로 구성하고,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1. 사법행정 또는 법관독립에 관하여 의견 표명할 사항
2. 대법원규칙의 제정 및 개정 등 사법행정 운영에 관하여 대법원 또는 대법원장에 건의할 사항
3.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인 판사 5분의 1 이상의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법률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제25조의2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관 3명(대법원장이 추천하는 1인,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하는 1인 및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1인)

제25조의2제4항제3호 중 “2명”을 “1명 및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으로 한다.

제25조의2제4항제5호 전단 중 “각계 전문”을 “인권과 사회적약자를 위한”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법관을 임명할 때는 대법원이 성별, 지역, 경력 등이 다양한 대법관들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10명”을 “12명”으로 한다.

제41조의2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전단 중 “각계 전문”을 “인권과 사회적약자를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호선한다”로 한다.

3.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7.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 이 경우 1명은 여성이어야 한다.

8.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

제41조의2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성별, 지역, 경력 등이 다양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제2항 중 “청렴성 및 친절성”을 “청렴성, 친절성 및 대한변호사협회가 취합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대법관의 정원 12명 중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합부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합부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2명의 대법관의 증원이 모두 이뤄진 날부터 구성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대법관) ① (생략)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u>14명</u> 으로 한다.	제4조(대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26명</u> -----.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u>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u>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u>대법원의 심판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u> 1. ~ 4. (현행과 같음) ② <u>대법원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의 2분의 1로 구성되는 제1연합부와 제2연합부를 둔다.</u> ③ <u>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과 각 연합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u>

<신 설>

② ~ ⑤ (생 략)

<신 설>

④ 대법관 전원의 의견으로 재판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심리 중인 연합부 대법관(대법원장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⑤ ~ ⑧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9조의3(전국법관대표회의) ①

판사회의의 법관대표로 구성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둔다.

②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판사수를 고려하여 법관대표를 각급 법원별로 할당하여 대표로 구성하고,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1. 사법행정 또는 법관독립에 관하여 의견 표명할 사항
2. 대법원규칙의 제정 및 개정 등 사법행정 운영에 관하여

		<u>대법원 또는 대법원장에 건의할 사항</u> 3. <u>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인 판사 5분의 1 이상의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u> 4. <u>그 밖에 법률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u>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① ~ ③ (생략)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 ----- -----.	
1. <u>법관 3명</u>	1. <u>법관 3명(대법원장이 추천하는 1인,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하는 1인 및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1인)</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u>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u>	3. ----- ----- <u>1명 및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u>학식과 덕망이 있고</u> <u>각계 전문 분야에서</u> <u>경험이 풍부</u>	5. ----- <u>인권과 사회적약자를 위한</u> -----	

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⑥ (생략) 제41조(법관의 임명) ① (생략)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단 신설> ③ (생략)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생략)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10명</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생략) 2. <u>법원행정처장</u> <신설> 3. (생략)	-----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41조(법관의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대법관을 임명할 때는 대법원이 성별, 지역, 경력 등이 다양한 대법관들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u>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12명</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u>헌법재판소 사무처장</u> 2. (현행 제3호와 같음)
--	---

7.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
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
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
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생략)

7.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
하는 법관 2명. 이 경우 1명
은 여성이어야 한다.

8.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과
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

9. _____
 -- 인권과 사회적약자를 위
한 _____. _____

 _____.

④ ----- 호선한
다.

⑥ -----

----- . 이 경
우 추천위원회는 성별, 지역,
경력 등이 다양한 대법관 후보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근무 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u>청렴성 및 친절성</u>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④ (생략)	② ----- ----- ----- ----- ----- --- <u>청렴성, 친절성 및 대한변호사협회가 취합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u> ---. ③ · ④ (현행과 같음)
---	---